

62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

차수	6차
일시	20. 2. 3. 18 : 30
장소	총학생회실

참석확인 (10/13)

간호	경경	공대	사범	사과	약학	예술	인문	의학	자연	동연	부총	총
○	○	○	○	○	○		○			○	○	○

□ 보고 안건

1. 단위별 특이사항 보고

- 총학생회 : 1월 22일 3차 등심위 진행, 등록금 최종 결정 관련 논의, 학부 등록금 동결, 유학생 등록금 인상 논의 : 동결 근거 부족, 인상 필요 이유 = 학교 재정 안정, 등록금 의존률 높음, 타대학에 비해 평균 혹은 조금 못 미치는 정도, 5%인상의 경우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달 => 유학생 대한 프로그램 or 제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&대학원 및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
- 간호대 : 수요일 학위 수여식 관련 논의 예정 및 새터 관련 입장문
- 경경대
- 공대
- 사범대 : 금일 입장문 게시 완료, 학장님 논의 후 결정
- 사과대 : 총새주단 회의 새터 취소 결정, 교내 행사로 대체, 내일 오전에 교지처 팀장님 미팅 후 입장문 올릴 예정
- 약대 : 새터 취소, 내일 교지처와 논의 예정, 부회장 자퇴
- 인문대 : 새터 취소, 대체 행사 논의 중
- 동연 : 입학식 배부 예정이었던 소개집 관련 업체&입학식 취소 문제로 인해 동아리 박람회 때 예정, but 이 행사 진행에 대한 차질 있을 수 있음(3월 10일 예정)

2. 방학중 불법카메라 전수조사

- 탐지 장비 4대 추가 구비 완료
- 탐지스티커 : '전수조사완료' or '전수 조사 중', 여러 스티커 제작의 경우 비용 문제 발생, 날짜 기입의 경우 정확한 날짜 기입시 부착 직후에 불법카메라 설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
- 전수 조사 중 : 불시점검 등의 지속적인 전수조사 중이라는 의미 드러날 수 있음
- 문진표에 특정 날짜가 아니라 몇 차례 했다는 표시에 대한 논의 or '수시로 하고 있다' 논의

3. 중앙감사위원 선발현황 및 추가모집/선발

- 2차 선발 완료
- 사범대 선발 완료, 자연대&공대는 선발 진행 중
- 미선발된 6개 단위에 대한 추가모집 예정 : 복학 예정자도 지원 가능, 일정의 경우 개강 일정에 따라 논의 후 결정 예정

□ 논의 안건

1. 코로나바이러스 관련

- 학위수여식, 입학식 및 개강 연기 관련 교무회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확정 예정, 경희대&홍대&서강대 개강 1~2주 연기, 총장단과의 간담회에 대해선 학생처를 통해서 전달 바란다고 함, 지난 금요일에 메일 송부 완료, 중운위 차원의 협조 요청서/실습 관련 학과의 종강의 경우는 예외의 경우도 있음
- 학교 측에 대한 자필 요청서 및 유학생의 기숙사 입관 문제 등에 대해 검진 및 확인 절차 필요성에 대한

요청, 새터 관련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요청, 재외국민 전형 학생들에 대한 검토, 개강 후 강의 진행 등에 대한 대책 및 예방책, 학교 차원에서의 공고문

2. 중앙감사위원회 예산 책정

- 감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필요 요청, 학생처 예산 사용에서의 어려움 발생, 이에 대한 대책안
- 한 학기에 30~40만원(프린터 렌트비, A4용지, 장부용 파일철 구매 용도, 보관용 사물함 추가비용 10만원 정도 발생가능), 전학대회 의결 후 결정할 사안, 안건 산정 전 중운위 차원의 논의 필요
- 학교 시설팀 or 총무팀에 요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검토 필요, 학생회비 사용 시 단과대별 배정액이 줄어들 수 있음
- 총무팀에서의 기자재 지원이 어려울 경우, 학생회비 사용이 필요할 수 있음. 미사용 금액은 전액 환급 후 추후 배부 생각 중
- 학생회비를 감사하는 기구가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우려됨,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요구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학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함

□ 기타 안건

- 단과대학별 개정 회칙/세칙 취합 요청
- 2020 다이어리 배부를 위한 단과대별 인원수 파악 요청
- 졸업앨범 업체 선정(입찰)을 위한 4학년 과대표 혹은 실무자 연락처 취합 요청
- 새내기 새로배움터 간 음주 팔찌 희망 단과대 희망수량 파악
-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대리인 관련 사항 : 단과대 집행부까지 대리 참여 가능 but 의결권 없이 발언권만, 회칙 상의 권한대행 내용이 명시되어있을 경우 의결권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모음.